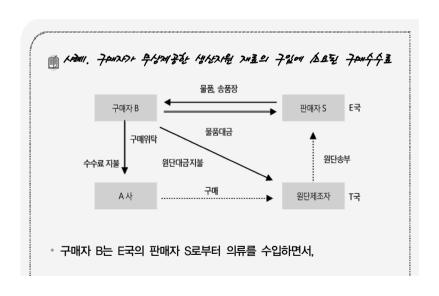


가격에 대한 조정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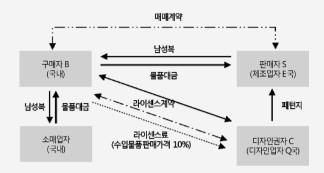


- T국의 원단 제조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T국에서 직접 E국의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판매자에게 무상제공을 위해 구매자는 국내의 A사에게 원단 구입업무를 위탁하고 원단가격의 1%를 구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 → 구매자가 부담하면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와 '생산지원비용'은 '가산요소' 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조정된다.
- →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을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해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말한다.
- → 이 사례에서 구매자 B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지원 물품인 원단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물품 의 구입을 위한 수수료가 아니므로 협정 제8조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동 수수료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지원'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MARIZ BY WIB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금속제 드럼에 담긴 맥주를 1리터당 \$30에 수입한다.
- 또한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한 맥주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소매용 빈병과 여기에 부착할 판매자의 상표라벨을 구입하였다.(1리터용 빈병 100병당 \$100, 라벨 100장당 \$5)
- 이번 선적에 드럼에 담긴 맥주 1,000리터와 빈병 1,000병, 라벨 1,000장이 같이 수입되었다.
- 금속제 드럼은 판매자 소유의 것으로 수입 후 되돌려 주었다. 이 때 되돌려 주는 운송비로 \$100이 들었다.
- 구매자의 소요비용 : 맥주 \$30,000, 빈병 \$1,000, 라벨 \$50, 드럼 회송비용 \$100
- → 금속제 드럼에 담긴 맥주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은 1리터당 \$30로서 \$30,000이다.
- → 금속제 드럼은 판매자 소유로 수입 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점으로 보아, 반복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기로서 그 내용물인 맥주와 일체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드럼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가격도 없으므로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 빈병과 라벨 역시 수입 시 맥주를 수용하고 있는 용기가 아니므로 가 산요소로서가 아니라, 자체의 과세가격을 각각 결정한다.
- → 또한 빈 드럼을 되돌려주는 운송비는 해당 용기(드럼)의 가격도 아 니며 수입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용기의 비용도 아니다. 또한 수입물 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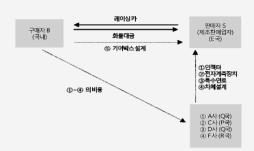
■ 사례3. 구매자>+ 무상으로 제공장+ 생산지원 (사례연구 8.1)



- 국내 의류판매업자(구매자)B는 E국의 제조업자(판매자)S로부터 남성복을 구입(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다.
- 수입되는 남성복은 구매자 B가 제3국의 유명 의류 디자인업자(디자인권자)C를
 통해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러 규격의 남성복 제조에 필요한 여러 장의 패턴자(디자인이 구현된)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이다.
- 구매자 B와 디자인권자C는 다음과 같은 권리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 -구매자 B는 국내에서 디자인권자C의 디자인이 구현된 의류를 공급(유통)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 -구매자 B는 디자인권자C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는 패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디자인권자C는 구매자 B가 지정한 자에게 패턴지를 제공한다.
 - -구매자 B는 디자인권자C에게 동 패턴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의류의 국내 판매가격의 10%를 권리사용료로 지불한다.
- 동 계약에 의해 디자인권자C는 패턴지를 판매자 S에게 제공하고, 구매자 B는 남성복 판매가격의 10%를 디자인권자C에게 지급하였다.
- B. S. C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동 거래에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없다.

- → 패턴지는 금형, 주형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의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패턴지에 소 요되는 비용이 생산지원의 가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구매 자 B와 디자인권자C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패턴지의 가격은 C로부터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한 구매자 B의 비용이다. 구매자 B가 디자인권자 C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패턴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생산지원 패턴지의 가격은 구매자 B의 국내판매가격의 10%에 해 당하는 권리사용료이다.
- → 구매자 B가 디자인권자 C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협정 제8조 제1 항 b호(생산지원)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 이므로 제8조 제1항 c호(권리사용료)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 패턴지에 대한 권리사 용료가 생산지원으로 가산되지 않는다면, 제8조 제1항 c호(권리사용 료)의 가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4. 생산자원 가격 (사회연구 5.2)



-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제조업)자S와 레이싱카 3대를 구입(수입)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i)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인젝터는 Q국의 A사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며, 해당 인젝터는 구매자 B가 A사로부터 1대당 \$10,000에 구매하여 무 료로 S에게 제공한다.
- ii) 수입물품의 엔진테스트는 P국의 C사가 생산한 전자계측장비를 사용하고 S의 공장에서 수행하며, 테스트에 불합격한 엔진은 폐기된다. 전자계측장비는 구매자가 C사로부터 \$60,000에 임차하여 무료로 S에게제공한다.
- iii) 수입물품이 제조사양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행테스트는 Q국 의 D사가 생산한 특수연료 5,000리터를 사용하여 판매자 S가 수행한 다. 이 특수연료는 구매자가 D사로부터 1리터당 \$10에 취득하여 판매 자 S에게 리터당 \$4에 제공한다.
- iv) 판매자 S는 수입물품의 차체를 R국의 F가 작성한 설계에 따라 생산한다. 해당 설계는 구매자가 F사로부터 \$120,000에 구입하여 무료로 S에게 제공한다.
- v) 판매자 S는 수입물품의 부품인 기어박스를 구매자 B가 무료로 제공한 설계에 따라 제조한다. 해당 설계는 구매자의 기술지원부서가 \$80,000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작성한 것이다.
- 구매자 B와 판매자 S, A, C, D, F사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 구매자 B와 판매자 S의 수입물품 거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1방법에 따라 평가된다.

- → 생산지원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가산된다.
 - i) 인젝터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부분품(제8조 제1항 b호 i 목)으로 취득가격 \$1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i) 전자계측장비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제8조 제1항 b호 ii목)로 임차비용 \$6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ii) 특수연료는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제8조 제1항 b호 iii
 목)으로 취득 비용인 \$50,000에서 판매가격 \$20,000을 뺀 할인
 된 금액 \$3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iv) 차제설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용역(제8조 제1항 b호 iv 목)으로 수입국 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구입가격인 \$120,000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v) 기어박스 설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용역이지만 수입국에 서 개발된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NAIS. दार्डिंश स्थारमिंडे का अभावा 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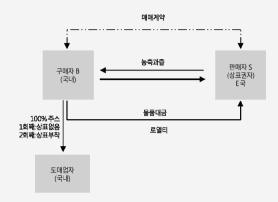
- 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회를 수출자 S로부터 켤레당 \$100의 가격으로 1,000켤레를 수입하였다.
- i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국내판매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자 S로부터 켤레당 \$90의 가격으로 1,000켤레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켤레당 \$100에 전량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ii) 국내의 B사는 X국의 신발 제조업체 M의 특허품인 축구화를 국내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신 국내판매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견본으로 사용할 축구화 1켤레를 \$100에 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1,000켤레를 생산, 켤레당 \$100로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v) 국내의 B사는 X국의 상표권자 M으로부터 자신이 생산하는 축구화에 M의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상표부착 축구화 1,000켤레를 생산, 켤레당 \$100에 판매하고 판매액의 5%인 \$5,000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i)의 경우 M의 수출가격 \$100에 권리사용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인 \$100,000이다.
- ii)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전매하는 권리'의 대가로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산되어야 한다.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 \$90,000에 권리사용료 \$5,000을 더한 \$95,000이다.

- iii)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 가산되지 않는다. 수 입 물품인 축구화 1켤레의 과세가격은 \$100이다.
- iv)의 경우 권리사용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축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수입물품이 없다.

■ 人種は、それ外景至の人を手が今のら

- 구매자 B는 아동복을 일부는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일부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 B가 판매하는 아동복에는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구매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S가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부착한다.
- B는 상표사용에 대해 S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다. 또한 B는 S로부터 수입한 아동복의 국내판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역시 S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표권사용료와 수입 아동복 판매 후 지급금은 전체를 합하여 B의연간 총판매액의 2%로 하기로 하였다.
- B의 수입 거래에 대한 검토결과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은 판매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 B의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판매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할 수 없으나 사후귀속이익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이 사례에서 사후귀속이익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사례기, 권감사용료 (권교의정 4.6)



- 구매자 B는 음료제조 · 판매업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E국의 판매자(상표권 자)S와 농축과즙 구입(수입)에 관해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농축과즙을 2회에 나누어 구입(수입)하였다.
- 수입물품인 농축과즙은 국내에서 물에 단순 희석하여 소매포장된 후 판매하는데, 계약에 따라 구매자 B는 S의 상표를 소매포장한 주스에 부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S의 상표를 부착한 주스의 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한다.
- 1회 수입된 농축과즙은 희석 후 S의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국내판매되어 상표권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았다.
- 2회 수입된 농축과즙은 희석 후 S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판매되어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 S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만 했다.
- → 첫 번째 수입된 물품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전매되어 사용료가 지불 되지 않아 가산하지 않는다.

→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주스에 관한 것이다. 이 주스는 수입물품인 농축과즙을 단순 희석한 것으로 원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 농축과즙의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수입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 사례8. 운송비 및 관련비용 : 노후선박 활공보험료

- 구매자 B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 S로부터 CFR(운임포함인 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한다.
- 구매자 B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보험료를 별도로로 부담하고 있다.
- 이번에 판매자가 선박을 용선한 선박이 낡아 노후선박 할증보험료를 부담 하였다.
- → 본래 구매자가 부담하는 노후선박 할증보험료는 제8조 제2항 c호의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 → 위 사례에서는 CFR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용선한 노후선박으로 운송하는 데 따른 할증보험료는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 그러나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부담한 보험료는 가산되어야 한다.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I.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제2·3방법)

1.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or Similar goods)

1) 개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없거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대체방법(Alternate Methods)의 순차적 적용

*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제5방법 : 산정가격방법(Computed Method)
* 제6방법 :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 · 동질(Identical)/유사(Similar)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⑤ (협정 제2, 3조 제1항 a호)

제2, 3방법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 판매되고,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이전에 세관에 의해수용되어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법 제31조, 제32조)

제2, 3방법을 규정하는 협정 제2조, 제3조는 '동종·동질(Identical)' 과 '유사(Similar)'라는 한단어만 바꾸면 완전히 동일하다. 먼저 동종·동 질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동종 · 동질물품과 유시물품

 "동종·동질물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동질물품에서 제외 되지 않는다.
 ⑤ (협정 제15조 제2항 a호)

(시행령 제25조)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 평판 및 상표의 존재는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이다. ⁵⁹ (현정 제15조 제2항 b호)

(시행령 제26조)

동종 · 동질물품, 유시물품은

- 생산국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
- 또한 동일인이 생산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이 고려된다.
- 수입국에서 수행되어 '생산지원'으로 가산 조정되지 않은 기술, 개발, 공예, 도안, 설계 등이 결합·반영된 물품은 제외된다.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판단 시례(예해 1.1)

i) 다른 용도로 수입되었으나 화학적 구성. 끝마무리 및 크기가 동일한 철판

→ 수입자가 어떤 철판은 자동차 차체용으로 어떤 철판은 용광로 입힘 쇠용으로 수입하였더라도 동종·동질물품이다.

ii) 실내장식가와 도매상이 각각 수입한 벽지

- → 모든 점에서 동일한 벽지는 동종·동질물품이다. 수입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가격의 차이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되는 품질이나 평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격자체가 고려요소는 아니다.

iii) 유시한 모양, 크기, 색깔의 꽃을 피우는 튤립 뿌리로 동일한 크기를 갖지만 다른 품종인 경우

→ 해당 뿌리는 동일한 품종이 아니므로 동종·동질물품이 아니다. 그러나 거의 동일한 크기, 형태, 색깔의 꽃을 피우고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시물품이다.

iv) 종이용 잉크와 종이 및 직물 겸용 잉크

→ 유사물품은 무엇보다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종이/ 직물 겸용 잉크가 종이 인쇄업에서 상업적으로 수용된다 할지라도 종이용 잉크는 겸용 잉크와 대체 사용될 수 없으므로 동종·동질물 품도 유사물품도 아니다.

어떤 물품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시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물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동종 ·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적용 요건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수입국(the same country of importation)으로 수출 판매되어야 하며,

- ii)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same time) 수출되어야 iii) 이미 제1방법에 의해 수용된 과세가격이어야 하다
- [●] ···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시행령 제25조 2항)
- ※ ・・・・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평가대상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된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다 ⁵⁹
 (협정 제2, 3조 제1항 a호)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란 선적일이 같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뜻하며, '수출된' 시간이므로 '판매된' 시간도 '수입신고일'도 아니다.(해설 1.1) 우리나라는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고, 선적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항일'로 하고 있다. 또한, '거의 동시에'의 기간을 선적일 전후 60일(合 1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세관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심사 중이거나 가격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권고의견 7.1)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 격도 제외된다. (법 제31, 32조 제2항)

4) 상업적 단계 등의 조정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 다른 거래 단계 및/또는 다른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제2, 3방법에서는 가능한 평가 대상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와 실 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없을 경우, 다른 상업적 단계 및 다른 수량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가격이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있다.

▶ 상업적 단계, 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사례 (예해 10.1)

(모두 제1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i) 동일한 상업적 단계, 상이한 수량이지만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구분	판매자	수량	단가	수입자	상업 단계
평가대상물품	Е	2,000	\$ 5	I	도매
동종 · 동질물품	R	1,700	\$ 6	F	도매

• 판매자 R은 판매물품의 1,000개 이상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6의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그 수량 외에는 판매가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제2방법에 의해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인 \$6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ii) 서로 다른 상업적 단계, 동일한 수량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분	판매자	수량	단가	수입자	상업 단계
평가대상물품	D	2,800	\$ 1.5	K	도매
유사물품	Е	2,800 (할인율 15%)	\$ 2.5	М	소매

- 판매자 D가 도매업자 K에게 \$1.5의 가격에 판매한 2,800개가 수입된다.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종·동질물품도 없다.
- 판매자 E에 의해 소매업자 M에게 판매한 유사물품 2,800개가 수입되었다. 이때 가격은 \$2,5에서 15% 할인율이 적용되었다.
- 판매자 E는 모든 소매업자에게는 15%를, 도매업자에게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 판매자가 상업적 단계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하므로, 유사물품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은 도매로 판매되었으므로 \$2.5에 2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제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의 차이에 따라 가산요소인 운송 관련비용의 차이가 고려되어 조정되어야 한다.

- ** ···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물품과 동종 · 동질 / 유사물품 간의 비용 및 요금의 중요한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 (협정 제2.3조 제2함)

예를 들어, 평가대상 수입물품이 10개씩 선적되어 수입되었는데 유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500개에 대한 가격이라면 이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 판매자가 수량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판매수량에 따른 가격표가 있어야만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제2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제2,3방법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평가대상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 유사 물품이 다른 생산자의 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 제31, 32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제5항)

- 구매자 B는 판매자 S가 제조한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송품장가격은 \$100 이지만, 별도로 S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물품가격의 10%인 \$10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110로 결정되고 있다.
- 이번에 견본용으로 S로부터 의류 5점이 무상으로 송부되어 왔다. 무상이므로 당연히 로열티도 없다. 이 견본용 의류와 기존 수입되는 의류는 동종 · 동질물품이다.
- → 견본용 의류와 동종·동질물품인 기존 수입되는 의류의 거래(과세) 가격 \$110에 기초하여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 방법에 의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방법에 의해 과거이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이다. 즉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Ⅱ. 국내판매가격 또는 공제가격방법(제4방법)

1. 국내판매 또는 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1) 개요

이름에서와 같이 국내판매가격방법은 수입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국내판매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보험료 관련비용,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 등을 공제하여 수입시점의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것이다.(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 — (국내판매와 관련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국 운송 관련비용 + 수입국 관세 및 조세)

…과세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물품이 그러한 물품의 수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한다.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국내판매가격방법은 먼저 공제의 기준이 되는 국내판매가격의 결정이 중요하다. 적절한 국내판매가격은 어떤 물품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판매된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2) 재판매되는 물품

●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수입물품이 수입국에서 수입된 것과 동 일한 상태로(in the condition as imported) 판매된다면, ···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전단)

재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세 가 지가 모두 가능하다.

해당 수입자의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다른 수입자에 의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판매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한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판매가 순차적으로 고려된다.

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한다.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가 없고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는 경우는 '초공제방법'이라 하 여 협정 제5조 2항이 적용된다.

해외수출포장을 제거하거나 국내시장판매를 위해 단순히 재포장하는 것은 추가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또 증발, 수축, 정상적 풍화 같은 자연적 변화는 허용될 수 있다.

3) 재판매된 구매자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at the first commercial level after importation)에서 그 물품의 수입자(whom they buy such goods)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단위가 판매된 가격을 말한다. ***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1항)

구매자는 먼저 수입 후 최초의 상업적(거래) 단계에 있어야 한다. 최초의 거래 하나가 아니라 최초의 상업적 단계이므로 여러 개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예로, 수입자가 1,000개의 물품을 수입하여 4월1일에 도매업자 A에게 400개, 4월2일에 도매업자 B에게 300개, 4월3일 도매업자 C에게 300개를 국내판매하였고, A, B, C는 각각 소매업자 X, Y, Z에게 재판매한 경우, 최초의 상업적 단계는 A, B, C에게 판매한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수입 후(after importation)'에서 '후(after)'는 시점보다는 단계(level) 에 관한 것이다. 재판매 거래가 수입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수입자가 수입 후 국내구매자에게 인도한다면 이용가능하다.

다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거래가격 배제사유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이지만 여기서는 수입자와 국내구매자와의 관계를 뜻한다. 또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특수 관계 자체만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만으 로 해당 판매는 배제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5항)

또한 수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협정 제8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생산지원 요소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판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배제된다.

4) 재판매된 시점

…과세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at or about the time of the importation) …
 (협정 제5조 제1항 a호)

국내판매가격은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가격이다. 우리 관세법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 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의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제2,3방법에서와 같다)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 판매된 것이 없다면, …평가대상물품의 수입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최대한 90일 이내에 … 수입국에서 판매된 … 물품의 단위가격
 을 기초로 한다.
 (협정 제5조 제1항 b호)

단,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된 상태대로 판매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후 90일 이내에 가장 빠른 날^{*}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의 이 규정은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가 없다면, 수입 후 90일 이내 가장 빠른 날의 판매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지, '거의 동시에'의 범위가 90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우리 법령은 협정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 &#}x27;가장 빠른 날(earliest date)'이란 그날까지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물품 또는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충분한 물량(sufficient quantity)으로 판매된 날을 뜻한다.(제5조에 대한 주해 10항)

■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국내판매가격" (시행령 제27조제3항)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 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5) 기장 많은 수량의 판매(Greatest Aggregate Quantity)

국내판매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 즉,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말한다.

▶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 사례 (부속서 ㅣ, 제5조에 대한 주해)

• 시례 1. 다음과 같은 가격표에 따라 판매된 시례이다.

판매수량	단위가격
1~107∦	100\$
11~25개	95\$
25개 이상	90\$

판매회수	판매수량	가격별 총 판매량
5개 10회 3개 5회	50 15	65
11개 5회	55	55
30개 1회 50개 1회	30 50	80

→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는 80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90이다.

• 사례 2, 여러 수량과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이다.

판매수량(개)	40	30	15	50	25	35	5
단위가격(\$)	100	90	100	95	105	90	100

판매수량(개)	65	50	60	25
단위가격(\$)	90	95	100	105

→ 취합하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는 65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90이다.

2. 공제금액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세 가지 이다.

- i)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ii)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iii) 수입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관세 및 기타 내국세

1)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i)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수입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금액 ⁵⁰ (협정 제5조 제1항 ਕ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한 가지만 공제되어야 한다.

물품이 대리·위탁에 따라 즉,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중개인 등이 판매한 경우 수수료만 공제되며, 수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구매하 여 재판매하는 경우 이유 및 일반경비가 공제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가산요소의 수수료와 다르며, 수입통관 시 관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떤 물품을 판매할 때 생산원가 또는 매출원가 부가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을 말하며, 일반경비는 판매(marketing) 와 관련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다.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동종·동류(of the same class or kind)의 물품'이란 어느 특정사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품목군이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을 포함한다.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도자기류의 접시·그릇과 주전자·찻잔은 동종·동질, 유사물품은 아니지만 동종·동류의 물품에 해당한다.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이윤과 일반경비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수입자의 금액이 통상적으로 가산되는 금액과 다를 경우, 수입자의 금액이 아닌 통상적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 …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 이 공제를 위한 수치는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을 수입국 내에서 판매할 때 얻어진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수입자가 제공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가 이러한 수치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 이외의 관련 정보가 근거가 될 수 있다. ⁵⁹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6항)

우리나라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통상의 금액'을 '동종·동류비율'이라 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수입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시행령 제27조)

-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 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 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 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 · 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 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 · 동류비율 을 산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제8항)

- 2) 수입후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 ii)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수입 이후 수입국에서 발생된 운송, 보험료와 관련 비용으로, 수입지에서 인도지까지 통상적인 운임, 처리비용, 인도비용을 포함한다.

- 3) 수입국의 관세 및 기타 내국세 (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 iii) 수입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관세 및 기타 내국세 ^୭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수입국 내에서 지급하여 야 할 관세, 기타 내국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공제된다.

물품판매에 따른 지방세가 '관세 및 기타 내국세'로 공제되지 않은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며,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도 공제되어야 한다.(제5조 주해 8항, 권고의견 9.1)

🗐 हेअर्रान्द्रधा रेड्ड अने (WCO Valuation TM Lesson 17)

- 3월15일에 10,000개의 자동차 휠베어링이 수입되었다.
- 이 물품은 위탁판매되어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관은 평가대상물품의 선적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수입자는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종 · 동질물품의 판매정보 를 제공했다.

Sale	Date	Quantity	Price(\$)	Buyer
1	3.6	2,500	100	비 특수 관계자
2	3.8	1,000	110	//
3	3.10	1,000	110	//
4	3.12	1,200	120	//
5	3.18	1,200	91	수입자의 자회사
6	3,22	1,500	110	비특수관계자
7	3.30	1,000	100	//

- 이들 물품은 원래 수입국으로의 항공운임, 보험료를 포함해 수입자에게 인도되었다.
- 수입시점 또는 거의 동시는 수입전후 10일로 확인되었다.
- 수입자는 판매가격에서 10%의 수수료, 국내운송비, 베어링 검사비 \$10/ 개당, 15%의 관세율을 공제하고 수출자(생산자)에게 잔액을 송금한다.
- 통상의 수수료는 10%, 실제 관세율은 20%, 국내운송비는 \$5로 확인되었다.
- → 국내판매가격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가장 많 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5번 판매와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요건을 벗어나는 7번 판매는 제외되어야 한다.

Unit Price	Date	Quantities	Aggregate Quantities	
100\$	3.6	2,500	2,500	
	3.8	1,000		
110\$	3.10	1,000	3,500	
	3.22	1,300		
120\$	3.12	1,200	1,200	

-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은 \$110이다.
 - 국내판매 단위가격 \$110에서
 - 통상의 수수료 10% \$11
 - 국내운송비 \$5 (=\$94)
 - 관세 20% \$15.67 (=\$94 \$94/1.2)
 - = 공제가격 \$78.33
- → 수입자의 수수료는 통상의 수수료와 일치한다.
- → 수수료가 공제되었기에 검사비 \$10은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3. 초공제방법(Super Deductive Method)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시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경우가 없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후 재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이를 '초공제방법'이라 한다.

i)수입물품, 동종·동질, 유사 수입물품 어느 것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경우가 없고, ii)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은 iii)해당 수입물품이 추가 가공된 후… (iv)수입시기와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삭제)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다… ⁹⁹ (협정 제5조 제2항) (법 제33조 제3항)

▶ 초공제방법의 특징은

- 첫째, 평가대상물품, 동종 · 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만,
- 둘째,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개도국은 제외)에만,
- 셋째, 오직 평가대상물품의 추가가공 후 재판매가격만 사용되며,
- 넷째, 시간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 추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기 초하여야 한다. *** (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 11항)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으로 수입물품의 동질성을 상실한 때에는 적용될 수 없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제5조에 대한 주해 12항)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보자.

▶ 추가가공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동질성 판단 시례

圖 主要测智性 人知 /

- 중간 화학물이 수입되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에 의해 가공되어 최종제품이 된다.
- 완제품은 그램당 \$30에 판매되었다. 이 가격은
 - -그램당 \$9의 가공비용과
 - -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이윤율과
 - 내륙운송비, 보관료 및 일반경비 \$4이 포함되어 있고
 -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10%이다.
- → 초공제방법 적용이 가능하며,
 - · 완제품 국내판매가격 \$30
 - 추가가공 비용 \$9
 - 통상적인 이윤 \$6 (\$30 × 20%)
 - 운송 및 일반경비 \$4 (=\$11)
 - 관세 \$1 (\$11/1.1)
 - = \$10

圖 建多对铅铅 外部 2

-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신의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카오디오를 수입하였다. 수입 후 유리판 및 색깔버튼을 장착하여 자동차에 카오디오를 달았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국내판매되었다.
- 수입된 카 오디오에 초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 수입물품은 완제품 자동차의 극히 일부만 구성하므로 초공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Ⅲ. 산정가격방법(제5방법)

1. 산정가격방법(Computed Value Method)

1) 개요

■ 대체방법(Alternate Methods)의 순차적 적용

*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Method)

* 제3방법 : 유시물품의 거래가격방법(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Method)

*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공제가격)방법(Deductive Value Method)

* 제5방법 : 산정가격방법(Computed Method)

* 제6방법 :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산정가격방법(제5방법)은 제1~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번째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단,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4방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국내판매가격방법이 수입국내 판매가격으로부터 역으로 수입시점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산정가격방법은 반대로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수입시점의 가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비용을 더하는 방법이다.

생산비용 +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 운송 관련비용

- - a) 재료, 조립, 기타 가공 비용 또는 가치(생산비용)
 - b)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c) 수입항까지 운송 관련비용 🦈

(협정 제6조 제1항)

- 2) 재료, 조립, 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생산 비용)
- (cost or value)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생산비용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고, 통상의 것이 아닌 실제 수치에 기초해야 한다.

재료, 조립 · 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의 예시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 원자재,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 원산지에서 제조자까지 원자재 운송비
- 조립ㆍ기타가공 비용 또는 가치
 - 모든 인건비
 - 생산 공정과 관련된 모든 조립비용
 - 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비용
 - 공장 감독·유지비용, 초과근무수당 등 간접비용
-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웨이스트나 스크랩으로 회수 가능한 비용
 - 수출시 휘급되는 생산국의 내국세

'비용 또는 가치'에는 앞서 가산요소에서 살펴본 '용기 및 포장 비용', '생산지원 비용'이 포함된다.(제6조에 대한 주해 3항)

- 관세목적상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 노무지, 재료비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 비용
- 생산지원 비용

생산지원은 적절히 배분된 금액이어야 하며, 특히 수입국에서 수행된 기술, 개발 등 용역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포함된다.

이들 비용들이 이중 계산되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 예를 들어, 수입자가 가구를 수입하기 위해 수출(생산)자에게 수입물품인 가구제 작에 '사용될 원목'과 '수입국에서 작성된 가구 도면' 제공했다면,
- → '원목'은 수입물품의 재료로 원목의 비용, 가격(운송비 포함)은 산정 가격에 포함되고,
- → '도면'은 수입국에서 제작되었으므로 생산자에게 청구된 비용만 산 정가격에 포함된다.
- 3)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평가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협정 제6조 제1항(b))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산정가격에 포함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은

i)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내 판매나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 ii)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생산자'들이 제조한 물품이다. 제조(생산)국이 아니다.
- iii) 평가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반영된 금액이다. 평가대상물품에 반영된 것만이 아니다. 제4방법에서와 달리제5방법에서 '동종·동류의 물품'은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iv) '통상적으로' 반영된 금액이다. 실제 발생한 수치가 아니다.
-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 은 … 생산자가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⁵⁰(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4항)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제4방법에서와 같이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생산자가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생산자의 수치가 수출국내 생산자의 동종·동류의 물품의 판매에서 통상적으로 반영된 수치와 불일치하는 경우, 다른 출처의 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

4)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 운송,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은 제1방법에서 가산요소와 마찬가지로 산정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법 제34조 제1항 제3호)

5) 제5방법 적용의 한계

수입국 당국은 산정가격을 위해 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노골적인 산업스파이(blatant espionage)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정가격방법은 생산자가 동의하고, 당사국 정부에 충분한 사전 통보가 제공되고, 당사국 정부가 조사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정가격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로 제한될 것이다.

(क्रिप्र) निवासिक नेप्रता किल्लिक क्रिप्रेय (क्रिप्र) क्रिप्र

- 판매자 S가 수입국의 I(S의 자회사임)에게 위탁판매형태로 피아노를 대당 \$325에 판매하였다.
- 또한 I는 S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 피이노를 만들기 위한 Tool을 제공하였음 이 확인되었으나 S의 가격설명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이 Tool의 시장가격은 \$1,000,000이며 100,000대의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어떤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피아노)도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 피아노가 수입국에서 판매되지도 않았다.

• 따라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산정가격방법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판매자 S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격설명 자료가 제출되었다.

자재비 \$100 조립비용 \$50 피아노 포장비용 \$50

- 이윤 및 일반경비 \$ 38

• 또한 수출국의 다른 악기생산자(동종 · 동류의 물품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졌다.

- T : 자재비의 38% - U : 자재비의 38% - V : 자재비의 20%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며,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없고, 수입국내에서 판매도 없으므로 산정가격방법에 의해 평가된다.
 - 자재비 \$100
 - 조립비 \$ 50
 - 이윤 및 일반경비 \$ 38(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포장비 \$ 50
 - 생산지원 \$ 10(생산지원 금액을 생산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 → 산정가격은 \$248이다.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Ⅳ. 합리적 방법(제6방법)

1. 합리적 방법(Fall-back Method)

1) 개요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원칙은 '거래가격방법'이며, 거래가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제2~5방법까지의 대체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들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입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거나(임대차방식의 수입), 동종·동질·유사물품 의 수입이 없거나, 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합리적 방법'이 사용된다. 영어로는 Fall-Back Method라 하여 IT분야의 비상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를 쓰는데,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란 뜻이다.(법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본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현정 제7조 제1항)

제6방법은 엄밀히 말해 특정 평가방법이 아니라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원칙과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원칙들은

- 첫째, 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ans)을 사용해야 하며,
- **둘째,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 해야하며,
- 셋째,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되,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 금지된 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한도 에서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ans)

- [●] 1. …최대한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에 근거해야 한다.
 - 2. ···평가방법은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신축성은 제7조의 목적과 규정에 합치된다. ⁵⁹

합리적인 방법, 기준이란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1방법부터 제5방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적용순 서는 지켜야 한다.

또한 제1~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을 제외한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신축적 적용의 예

제1방법~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i) 동종·동질, 유시물품의 거래가격, 즉 제2, 3방법의 생산국과 시간요소 의 동일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제6방법에서는 평가대상물품과 생산국이 다른 동종·동질·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할 수 있고,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선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할 수 있다.

ii)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시실이 있는 동종· 동질, 유사물품의 역산가격 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제2, 3방법에서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제6방법에서는 이들 물품들의 공제가격이나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iii) 제4방법, 공제가격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을 사용하는 '초 공제방법'이 가능하지만, 제6방법에서는 수입자의 요청이 없어도 가 능하다.

iv) 제4방법, 공제가격에서 수입 후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はんその ひき そぞをうきまの ンタき ファマま む かめいはすな トタ

- 수출국 J의 판매자 S가 수입국의 구매자 B에게 철제 요리기구를 수출하였다.
- 수입물품은 제3국(C)의 제조자 M이 생산하여 J국에 먼저 수출하고 J국의 판매자 S는 이를 재포장하여 B에게 재수출한 것이다.
- S는 B에게 박스당 \$36에 수출하였으나 이 가격은 6개월 이내에 B가 S로부터 다른 형태의 요리기구 500박스를 구입한다는 조건(1방법 적용 검토)으로 결정된 것이다.
- C국산 철제 요리기구는 처음 수입된 것으로 동종 · 동질, 유사물품도 수입된 적이 없다.(2,3방법 적용 검토)
- B는 수입국에서 소매점과 판매망을 가진 자신의 자회사에게 이 수입물품을 박스당 \$51,5에 수입된지 5일 후에 재판매(4방법 적용 검토)하였다.
 - -판매가격 내역: 해상운임 및 보험료 \$4, 일반경비 \$2, 이윤 \$1, 수입 후 운송비 \$0.5, 관세 \$1.5 (박스당)
- B는 M과 거래하지 않으므로 M의 생산비자료는 사용불가능(5방법 적용 검토)하다.
- B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S는 수출국 J에서 동종 · 동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국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두 수입자에게 박스당 \$40로 다른 별도의 조 건 없이 판매하고 있다.
-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 으로 제1방법 적용 불가, 동일생산국의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수입된 적이 없으므로 제2,3방법 적용 불가, 수입국내 재판매가 특수관계자 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제4방법 불가, 생산비 자료가 이용 불가하므로 제5방법 불가

- → 평가대상물품과 동일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아니지만 동종·동 질 물품으로 간주되는 S가 제조한 물품의 수입국으로 수출판매된 가격인 \$40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3)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

합리적인 방법은 WTO관세평가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WTO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 i) 1994년도 GATT 제7조의 중요성 인정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확실성을 제고
- ii)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과세가격의 사용을 배제
- iii) 공정하고 일관되고 중립적인 관세평가 체제가 필요함을 인정
- iv)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함
- v)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기초해야 함
- vi) 평가 절차는 공급원 간에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vii)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

GATT 제7조에서 제시된 원칙은

- i)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 하여야 하며,
- ii) 실제가격은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에서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해' 판매된 가격이어야 하며,
- iii) '국내원산지 물품 가격' 또는 자의적,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면안 되고,
- iv) 면제,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예정인 수출국의 내국세를 포함하면 안 된다.

제6방법에서도 협정과 GATT 제7조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이 준 수되어야 한다.

4)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

합리적 방법은 다른 나라들에서 '최후의 방법' 또는 '잔여방법'이라고 불린다. 이는 제1~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어떻 게든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무상 제1~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1~5방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방법은 GATT 제7조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들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범위가어디까지인지, 즉 얼마만큼 합리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방법은 정답(正答)이 아니라최선의 해답(解答)을 찾는 방법이다. 이때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이다.

즉, 합리적 방법이란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세관당국이나 수입자에게 무한대의 강제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위한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제7조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의견 12.3)

또한, 제6방법에서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제공된 정보는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 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 금지된 가격(Restrictions)

제6방법의 신축성은 다음 7가지 가격이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i) 수입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를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ii)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는 방법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신축적 적용을 하여 두 가지 가격이 가능한 경우 높은 가격을 선택해선 안된다. 반대로 낮은 가격 이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iii)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물품 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는 덤핑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워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iv) 제5방법에 의해 동종·동질 또는 유시물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이 이닌 생산비용

제5방법은 해당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에 한정되나, 제6방법에서는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산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가격은 제5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v) 수입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가격

각 수출국 시장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vi) 최저 과세가격

이것은 관세평가를 보호주의적 정책이나 재정수입확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vii)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이것은 실제 상거래, 상관행에 기초하지 않은 평가 제도를 배제한다.

6) 결정방법의 서면 통보

●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7조에 의해 결정된 과세가격과 그 결정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 (협정 제7조 제3항) 이 규정은 단지 절차 규정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리적 방법이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최선의 합리적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마지막으로, 특수물품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제1~5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실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방법의 기준을 어느 정도 표준화하여 가능한 한 통일적이고 일관 된 평가를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
- i)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 ii)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 iii) 임차수입물품
- iv) 중고물품
- v)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제품과세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 vi) 범칙물품

- v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 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 viii)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 물품들에 대한 구체적 합리적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의2 부터 제7조의8까지와 고시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들은 예시 또는 임의 규정으로서 반드시 규정된 방법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とてはみ メルキの はれ 今となると 要番の ありト 人主

- 수입자 B는 전문 수중촬영장비를 국내 해양영화 제작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수출국의 수출자 S로부터 수입했다.
- 수출자 S는 이 수중촬영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임대만 한다. 수입자 B의 임대료는 연간 \$1,000로 연초에 지급된다.
- 이 장비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로 수입된 적이 없고, 경제적 내구연한 7년으로 확인되었다.
- →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매우 특이하므로 동종·동질, 유사물품도 없다. 국내에서 재판매되지 않으므로 제4방법도, 생산비용에 대한 자료도 없어 제5방법도 불가능하다. 과세가격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 \$1,000 × 경제적 내구연한 7년 = \$7,000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 テな으로 수質된 素素의 평フト 人間

- 수출국의 S사의 종이제조공장은 재정위기와 자국내 과잉생산 문제로 폐업하였다.
- 이 공장에는 하루 100ton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종이생산설비가 가동 중이었다.
- 한국의 종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자회사 B에게 이 종이생산 설비를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 B가 철거 및 포장 비용만 S에게 지급하고, 종이생산설비는 무상으로 수입되었다. (종이생산설비의 총 수명은 15년이고 수출시점에 3년간 사용되었다.)
-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결과, 수입물품과 다른 면은 유사하지만 중고품이 이닌 신품 종이생산설비가 다른 수입자에 의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었고, 거래가격은 \$60,000이었다.
- →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입된 동종·동질, 유사물품도 없다. 또 국내에서 재판매되지 않았고, 중고물품이므로 제1~5방법 모두 적용 불가능하다.
- → 유사한 설비의 가격은 \$60,000이고, 수명은 15년이다. 안분하면 1년에 \$4,000이다. 수입된 중고 설비는 3년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사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60,000-\$12,000 = \$48,000의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단, 이 안분은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체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사례연구

🗐 사례।. इकुइर्य 또는 유사물품의 거화가격에 기초한 교세가격 결정 ハナルカムフト がも オテノ

- 구매자 B는 판매자 S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S사 브랜드의 잡화류를 수입하 고 있다.
-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에만 적용되는 특별 히 결정된 가격이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한편, 판매자 S는 평가대상물품인 자사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 · 동질물품 을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구 매자 B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에 따라 판매자 S와 A백화점 간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판매자와 A백화점간의 동종 · 동질물품의 송품장 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품장가격의 지불 이외에 해당 물품 국내매출액의 5%상당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A백화점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송품장가격에 매출액 5%상당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한다.
- 구매자 B는 판매자에게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후귀속이익의 지불이 없다. 그렇다면 A백화점의 송품장가격 \$100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제2, 3방법에 의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이미 과세가격으로 채택된 바 있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판매자 S와 A백화점 간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송품장가격 \$100에 수입물품 매출액의 5% 상당액의 사 후 귀속이익을 가산한 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 정하게 된다.

🗐 अंबाट, इकेइये 또는 유사물품의 अध्यानिया 기초र्ध 교세기 वेये (是奏今径の 以告 智宁)

- 수입자 B는 수출자 S로부터 도자기를 선편으로 수입하고 있다.
- 이번에는, 수출자로부터 항공편으로 도자기가 무상으로 송부되어 왔다.
- 해당 물품은 선편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품과 동종 · 동질물품으로, 선편에 의한 최근의 수입실적(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있다.
- 이 경우, 무상으로 항공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 →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방 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 그들 물품과 수입물품간에 상업적 단계, 수량의 차이,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 야한다.
- → 본 사례의 경우, 수출자 S가 무상으로 송부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2 방법을 적용하여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계 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 · 동질물품의 운송형태 가 다르므로 운임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한다.

■ 사례3. 일대차 계약에 따라 수일되는 훌륭 (연구 2.1)



- 국내 수입자 M은 특수관계가 없는 E국의 수출자(임대회사) X와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신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수입한다.
 - i) 임대기간은 최저 36개월로 하며, 갱신가능하다.
 - ii) 국내에서 동 기계설비의 설치와 정비에 관련되는 비용(최초 2년간은 1년에 100만원, 그 후에는 1년에 150만원)은 수입자 M이 수출자 X에게 지불한다.
 - iii) 임대료는 1개월에 250만원이며, 위 ii)의 국내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비용(①), 10%의 이자비용(②) 및 수출국에서 국내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③)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수입물품인 기계설비와 동종 · 동질 또는 유사물품은 수입국에 수입된 적이 없으며, 또한 수입자 M은 수입물품의 생산비용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
- 수입자 M이 제출한 수출자 X가 작성한 수입물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르면 동 기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이다.
- → 수입물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것으로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제2, 3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생산비용도 알 수 없으므로 제4, 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 적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의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를 알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의 전체 내용연수 동안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총액을 기초 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전체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지급하여 야 할 임대료 총액(R)에서 국내 설치 및 정비에 관한비용(M=①)과 이자비용(I=②*)을 공제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 사례4. 변활손상된 물품의 교세가격 결정 (해결 3.1)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어패류를 냉동컨테이너로 수입하고 있다.
- 이번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 후 품질검사를 하였더니, 변질되어 선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원인은 선적지에서 자연해동에 따른 사고로 확인되었다.
-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 서베이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이 조사보고서에는 국내판매가격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잔존가격율을 60%로 판단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은 당초 계약대로 이미 지불되었다.
- →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다.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과 상이한 변질·손상된 물품으로 실 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체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 →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 격은 변질·손상에 의한 가치감소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가치감소는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수리 또는 개체비용,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등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의2)

[★] ② 여기서 공제해야 할 이자비용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복리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본 사례의 경우 공인 조사보고서에 잔존가격율이 60%이며, 그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0%를 변질·손상에 따른 가치감소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수입자 B는 기술제휴사인 수출국 S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을 수입하였다.
- 수입 후 동 기계는 계약상의 성능에 미달하였다. 이에 S사는 무상으로 대체품 을 보내왔다.
- → 무상으로 수입신고한 밀렁머신은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제1방 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 → 제2~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이 최초 수입물품의 대체품임을 고려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평가대상물품의 선적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수입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भक्रार्थः भामित्ररेण राजभवेत श्रह्मित्रणम ग्रीर्निर्दे निर्देश स्त्री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연구 13.2)

- 국제시장에서 나사못(Spiral nail)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steel wire rod' 의 가격이 톤당 \$600~\$675(국내판매가격은 \$670)인 반면, X국 원산지 나사 못이 톤당 $$340 \sim 440 의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Y국 세관에 접수 되었다.
- Y국 세관이 'steel wire rod'의 실제 수입자료를 조사한 결과, 'steel wire rod'의 국제 시장 가격은 톤당 \$675로 확인되었다. 산정가격 방법으로 나사못 수입가격을 톤당 \$750로 평가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세관은 몇 차례 수입자들과 회동을 하여 신고가격이 거래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수입자들은 물품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 지 못하고 잠정송장(proforma invoice)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만 을 제출하는 한편, 서면 매매계약서도 없이 구두 합의로서 물품을 수입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세관은 회계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수입자들은 실제지급 가격을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회계자료와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 나사못의 신고가격이 나사못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국제시장 가격보다도 낮기 때문에 세관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 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 → 수입자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 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가격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세관이 제출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 자가 이에 응답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다.
- → 이 사례에서 세관은 신고가격이 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수입자에게 요청하였고, 수입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계약서나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 다. 더욱이 협의 중 검토된 회계자료에서도 실제지급가격을 뒷받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관은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졌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대체 평가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 → 동종·동질 또는 유사 나사못의 가격을 톤당 \$750로 결정한 사례가 있지만, 동 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산 정가격이므로 제2, 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6방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강의노트〉

관세평가 전자학습(e-Learning) 모듈

Customs Valuation Archer

• 2011.7 초판 발행 | 2014.11 제1개정판 발행 | 2017.1 제2개정판 발행 | 2021.8 제3개정판 발행

• 발행인 : 관세평가분류원장

• 발행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노지선, 이창민, 김순덕, 하정오, 손동희, 이영민, 추민지)

• 인 쇄 : 아디모 디자인